

제6강

개인정보의 이전 등

권 건 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6. 16.

GDPR 제6장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제44조 이전을 위한 일반원칙

제45조 적절성 판정에 근거한 이전 (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제46조 적절한 보호조치에 따른 이전 (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제47조 구속력 있는 기업준칙 (Binding corporate rules)

제48조 유럽연합의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이전 또는 공개

제49조 특수상황에 대한 적용배제

제50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조

1. 문제의 상황

EU Directive와 Safe Harbor 협정

- **EU Directive 95/46/EC 제25조**

- EU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EU 지역에서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

- **Safe Harbor Decision** (Decision 2000/520 of the European Commission)

- 2000년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공유 협정(Safe Harbor 협정) 체결
- 미국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Safe Harbor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함
-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은 이를 근거로 유럽에서 취득한 EU 시민의 개인정보(급여, 연락처, 구매목록, 사이트 방문기록 등)를 활용하여 막대한 이윤 취함

- **Max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5. 10. 6. CJEU)

- Safe Harbor 협정 무효화

Max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 **사건의 경과**

- 오스트리아 법대생 Maxmillian Schrems가 2013년 7월 Facebook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 법원에 Facebook 이 유럽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
- 그는 Facebook이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구
- 아일랜드 법원은 2014년 6월 이 사건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로 이관
- Facebook 등 미국 IT 기업의 정보 수집과 전송이 EU 시민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문제됨
- 이에 Safe Harbor 협정이 EU Directive 95/46/EC 제25조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 검토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판단 (CJEU, 2015. 10. 6. C-362/14)**

- Safe Harbor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
- 2013년 Edward Snowden이 폭로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통신정보 수집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 전송한 정보가 손쉽게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
- Safe Harbor가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국가감독기구의 법적 제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
- 결국 아일랜드 정보보호감독기구가 Schrems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IT 기업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

쉬렘스 판결 이후의 대응

- **EU-US Privacy Shield**

- 2016. 2. 2.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공유와 전송을 위한 새로운 협정에 합의
- 미국은 EU 측의 불만사항 처리하는 옴부즈맨을 국무부 소속으로 임명하고,
- 공공기관이 안보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규제와 감찰 실시 약속
- 향후 유럽 집행위원회의 **적절성 평가**(adequacy evaluation) 절차 거쳐 확정
- 미국의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CISA) 등 통신감시 관련 법의 개혁이 관건

cf. 우리나라는?

- EU 진출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 폰, 스마트 TV, 모바일 메신저, 게임 서비스 등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는 상황
- 2017년까지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향후 EU-US 합의 상황의 전개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EU Directive

➤ 제25조 원칙 (Principles)

-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도록 해야 함
 - ✓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 ✓ ensures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 **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 :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 정보의 성질
 - ✓ 정보처리의 목적과 기간
 - ✓ 정보의 최초 송신국과 최종 수신국
 - ✓ 포괄적 · 부문적으로 시행되는 법의 체계
 - ✓ 제3국에서 적용되는 전문분야의 법규와 보안조치 등
- 회원국과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제3국이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 **통지**해야 함

➤ 제26조 적용배제 (Derogations)

- 다음의 경우에는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됨
 - ✓ 정보주체가 국외 이전에 **명백히 동의**한 경우
 - ✓ 정보주체와 관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 or 정보주체의 청약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경우
 - ✓ 관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이행 or 그러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경우
 - ✓ **중요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 소송의 제기·수행 혹은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의 주요한 이익(vital interests)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대중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축되고, 일반인이나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 자문하기 마련된 등록부(register)로부터 국외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cf. 중요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ex. 과세당국, 관세청, 사회보장관청 사이의 국외 이전 (Recital 58)

➤ Working Party 29 국외이전 보고서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 Applying Article 25 and 26 of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1998)

-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의 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도 구비되어야 함

◆ 실체적 판단기준 (Content Principles)

■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 1) 목적제한의 원칙 (the purpose limitation principle)
- 2) 정보의 질 확보 및 비례성 원칙 (the data quality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 3) 투명성원칙 (the transparency principle)
- 4) 안전성 원칙 (the security principle)
- 5) 열람·정정 및 반대할 권리 (the rights of access, rectification and opposition)
- 6)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restrictions on onward transfers)

■ 추가적 원칙 (Examples of additional principles)

- 1) sensitive data :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explicit consent) 등 추가적 보호조치 강구
- 2) direct marketing : 정보주체에게 ‘opt-out’ 권리 보장
- 3)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 의사결정 관련 logic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개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 강구

➤ Working Party 29 국외이전 보고서

◆ 절차적 판단기준 (Procedural/ Enforcement Mechanis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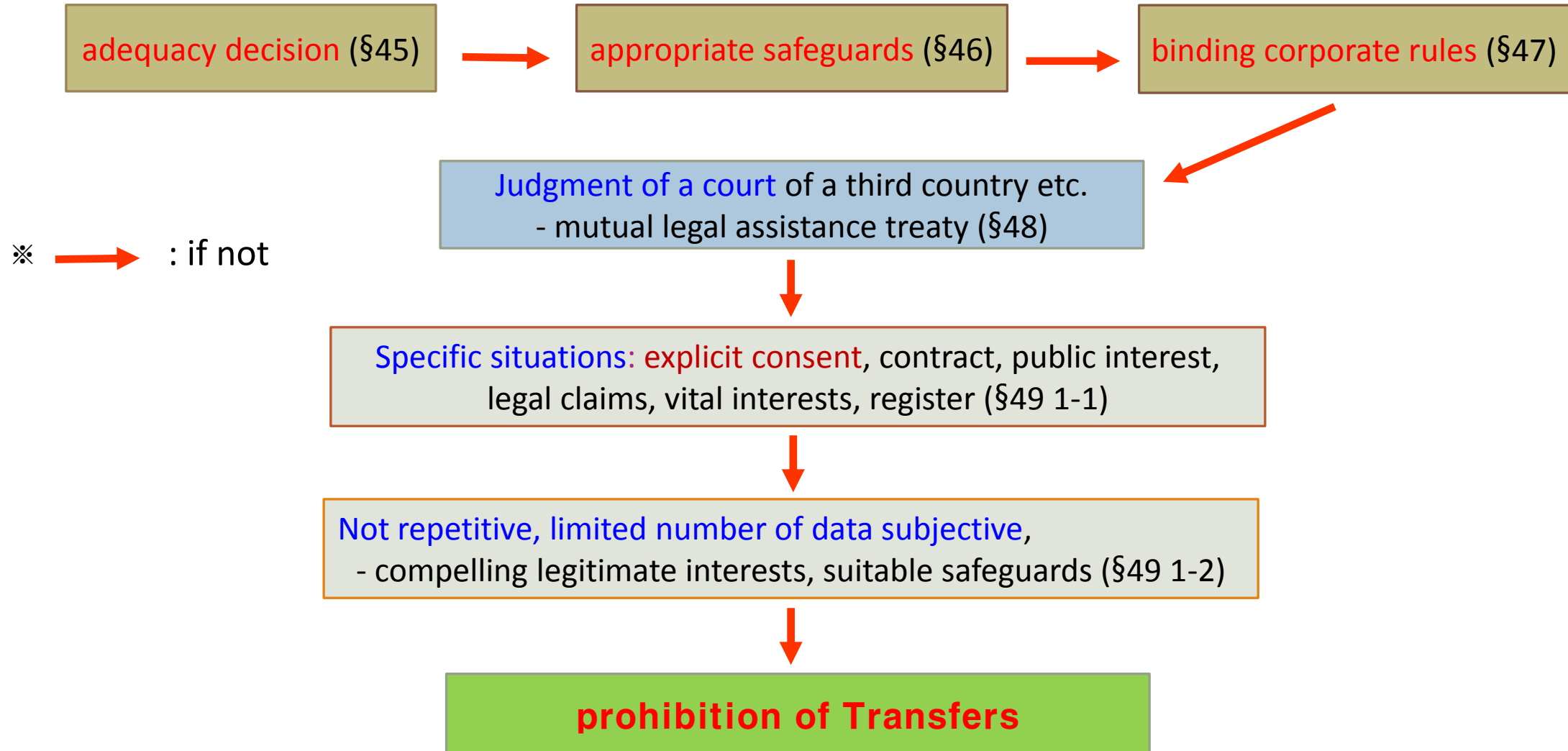
- 1) 보호원칙 준수의 양호한 수준 확보
 - ✓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의무 명백한 인식
 - ✓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보호체계
 - ✓ 효과적이고 억제력 강한 제재수단 통해 보호원칙 존중되도록 유도
- 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보호체계
 - ✓ 정보주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과도한 부담 없이, 권리 행사 가능해야
 - ✓ 민원에 대한 독립적 조사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 요구
- 3) 보호원칙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appropriate redress) 필요
 - ✓ 손해배상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
 - ✓ 독립적 조정 또는 중재 시스템 필요

3. GDPR

제44조 이전을 위한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 for transfers)

- 제3국 or 국제기구로 이전되어 처리되거나 처리될 예정인 모든 개인정보의 이전(거기서 또 다른 제3국 or 국제기구로의 이전 포함)은,
 - 본 Regulation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 관리자와 처리자가 제5장에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할 때에만 허용됨
- 제5장의 모든 조항은 본 Regulation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보호 수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함

➤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제45조 적절성 판정에 근거한 이전 (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1. 제3국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집행위원회가 해당 제3국 or 국제기구가 **적절한 보호의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 허용됨. 그러한 이전은 그 어떤 특별한 승인을 요하지 않음
2. **보호수준의 적절성**(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의 **평가**(assessing)에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특히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 ✓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공공치안 · 방어 · 국가안보 등에 관한 일반법과 특별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외 이전에 대한 특별법과 보안조치, 판례법, 정보주체의 권리, 효과적인 행정적 · 사법적 구제 등,
 - ✓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존재, 정보주체 권리 실현의 지원 · 조언 및 감독기구와의 협력에 적합한 집행력 등 실효적 기능,
 - ✓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적 합의 참여 및 그에 따른 의무 등
 - 적절성 결정은 전체 EU의 **법적 확실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의미 가짐 (Recital 103)
 - 적절성 결정 시 특수한 정보처리 활동과 제3국에 시행되는 입법과 실행 가능한 법적 기준의 범위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고려 필요 (Recital 104)

제45조 adequacy decision에 근거한 이전

3. 집행위원회는 보호수준의 적절성을 평가(assessing) 후, 시행재결(implementing act)에 의해 제3국 등이 적절한 보호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는 판정(adequacy decision)을 할 수 있음
- implementing act는 최소 4년마다 주기적 심사를 위한 체계를 규정해야 하며, 해당 제3국 등의 관련 발전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 implementing act는 적용범위의 구체화, 감독권한과 감독기구에 대한 정의 필요
 - implementing act는 제93조 제2항의 조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되어야 함

cf. Recital

- 집행위원회는 제3국 등에 의한 보호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 자문하여야 함 (Recital 105)
- 점검과 주기적인 심사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및 기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와 판단을 고려하여야 함 (Recital 106)

제45조 **adequacy decision**에 근거한 이전

- 제3국 등이 더 이상 적절한 보호의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 집행위원회는 소급효 없는 **시행재결**에 의해 **adequacy decision**을 **폐기, 수정 또는 보류**하여야 함 (제5항)
- 제5항에 따른 결정은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문제된 제3국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제7항)
-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보호 수준이 보장되거나 혹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목록을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와 **그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함(제8항)
- Directive 95/46/EC 제2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은 본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채택된 집행위원회 결정(Commission Decision)에 의해 수정, 대체 또는 폐기될 때까지 유효함(제9항)

제46조 적절한 보호조치에 따른 이전 (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1. adequacy decision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자 및 처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 ✓ 관리자 및 처리자가 스스로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마련할 경우, 및
 - ✓ 실행 가능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주체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활용 가능할 경우
2. appropriate safeguards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감독기구의 특별한 승인을 요하지 않음
 - ✓ 공공기관들 or 공공단체들 간의 법적 구속력 있고 실행 가능한 협정서(instrument)
 -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 ✓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정보보호 표준약관(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 ✓ 감독기구가 채택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정보보호 표준약관
 - ✓ 제3국에 속한 관리자 or 처리자의 구속력 있고 실행 가능한 협정서(commitments) 및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r 제42조에 따라 승인된 인증 체계(certification mechanism)

제46조 **appropriate safeguards**에 따른 이전

3. 관할 **감독기구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도 **appropriate safeguards**로 제공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관리자, 처리자 or 수취인 사이의 계약조항(contractual clauses), or
 - ✓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포함하는 공공기관 or 공공단체 간 행정합의(administrative arrangements)에 삽입된 규정
 -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정보보호표준약관**이 존재하더라도 관리자가 **다른** 임시적 **계약조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표준약관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함 (Handbook, p.137)
 - 공공기관 or 공공단체 간의 **행정합의**의 규정에 대해 관할 **감독기구의 승인**을 요하도록 것은 그 협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임 (Recital 108 참조)
4. 관할 감독기구의 승인에는 유럽연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63조의 **일관성 체계**(consistency mechanism)가 적용되어야 함
5. Directive 95/46/EC 제26조 제2항에 근거한 회원국 또는 감독기구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 그 감독기구에 의해 수정, 대체 또는 폐기되기 전까지 유효함

제47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Binding corporate rules)

1. 다음의 경우, 관할 감독기구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을 일관성 체계(consistency mechanism)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하여야 함
 - ✓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사업체 or 협력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그들에 의해 집행되는 것일 경우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행 가능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일 경우
 - ✓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경우
-  **binding corporate rules** : 제3국의 기업체나 협력 회사에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 회원국의 역내에 설립된 관리자나 처리자가 **고수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의미 (본 규정 제4조 제20호)
3. 집행위원회는 관리자 및 처리자, 감독기구 간의 BCRs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포맷과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음
 - ❖ BCRs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초안을** 표준화된 **신청서와 함께** 관할 감독기구에 송부하여야 함 (Recommendation 1/2007)

제47조 Binding corporate rules

2.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은 최소한 다음 사항 적시하여야 함

- ✓ 사업체 또는 기업체, 그 개별 구성원의 조직과 세부 연락처
- ✓ 이전 개인정보의 범위, 이전의 목적과 유형, 관련 정보주체의 범위, 이전 대상 제3국의 명단
- ✓ 구속력의 대내적·대외적 법적 성질
- ✓ 목적 제한, data minimisation, 보존기간 제한,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처리의 법적 근거,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등의 원칙, BCRs 적용 않는 단체로의 이전 요건 적용
- ✓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회원국의 감독기구와 법원에 이의 제기할 권리, BCRs의 위반에 대한 배상 받을 권리, 진정 절차 등
- ✓ EU 외 거주 직원의 BCRs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관리자 or 처리자의 책임 인정
- ✓ 정보보호책임자 or BCRs에 따른 모니터링 및 진정처리 책임자
- ✓ 사업체 or 기업체 내의 BCRs 준수 확인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 ✓ BCRs 변경의 기록과 보고, 그 변경을 감독기구에 보고하기 위한 체계
- ✓ 특히 사업체 or 협력 회사의 구성원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구와의 협력 체계
- ✓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적절한 정보보호 훈련 등

제48조 EU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이전 or 공개

- 관리자 or 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 or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제3국의 법원 or 심판 기관의 **판결** 및 행정관청의 **결정**은,
- 다음의 경우에만 수용되거나 이행될 수 있음
 - ✓ 이 장에 따른 **다른 국외이전의 사유**에 반하지 않으면서,
 - ✓ EU or 회원국과 그 이전 or 공개를 요구하는 제3국 간에 발효된 사법공조조약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등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에 근거할 경우

➤ 제49조 특수상황에 대한 적용배제 (Derogations for specific situations)

- 앞의 adequacy decision, appropriate safeguards, BCRs 관련 사항이 결여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 (제1항 제1문)
 - ✓ 그 이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지한 후 정보주체가 그 이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 정보주체와 관리자 간의 계약 이행, 정보주체의 청약에 따른 계약 체결 위해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의 이익 위해 관리자와 타인 간에 체결된 계약의 체결 or 이행 위해 필요한 경우
 - ✓ 중요한 공익적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
 - ✓ 소송의 제기, 수행 or 방어 위해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의 동의 불가능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나 타인의 주요 이익 보호 위해 필요한 경우
 - ✓ 대중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축되고, 일반인이나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 자문하기 마련된 등록부(register)로부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cf. Recital 112

- 중요한 공익적 이유 : 공중보건, 전염병 환자 추적, 스포츠 도핑 억제 등
- 정보주체 또는 타인의 주요 이익 : 생명 or 신체의 완전성 등

제49조 특수상황에 대한 적용배제

- 만일 adequacy decision, appropriate safeguards, BCRs의 조항에 근거할 수 없었고,
- 앞의 특수상황(register transrer 제외)에 따른 적용배제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다음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이 **추가적으로 허용**됨 (제1항 제2문)
 - ✓ 해당 이전이 반복적이지 않고,
 - ✓ 제한된 인원의 정보주체에만 관련되며,
 - ✓ 정보주체의 이익 or 권리와 자유보다 더 압도적으로 우월한 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 ✓ 관리자가 그 이전에 관한 모든 상황을 평가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충분한 보호조치(suitable safeguards) 취한 경우
- 관리자는 **감독기구**에 해당 이전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고,
- **정보주체에게** 그 이전의 사실과 추구된 압도적 정당한 이익 등을 **통보**하여야 함

제49조 특수상황에 대한 적용배제

- **등록부 이전**(transfer from a register)은 개인정보 전체 or 등록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모든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안 됨
 - 등록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의 요청에 의한 경우 or 그들이 수취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부 이전**이 허용됨 (제2항)
- **동의 or 계약**을 이유로 하거나 or 제1항 제2문의 **추가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 공공기관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이 허용되지 않음 (제3항)
- adequacy decisions 없는 경우, **EU 또는 회원국의 법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특히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것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제5항)

제50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조

- 집행위원회와 감독기구는 제3국과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의 효과적인 시행 촉진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의 발전
 - ✓ 통지, 이의 제기, 조사 지원, 정보 교환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입법 시행 과정의 국제적 공조 제공
 - ✓ 개인정보보호 입법 시행 과정의 국제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토론과 활동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 ✓ 개인정보보호 입법과 제3국과의 사법적 갈등 등에 관한 관행의 교환과 문서화 증진
 -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이나 공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훨씬 권리 침해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특히 정보보호 감독기구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Recital 116)

4. 국내의 입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됨

■ 제14조 제2항

-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63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

■ 제63조 [개정 2016.3.22. 시행 2016.9.23.]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문구 개정 2016.3.22.>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 생략 가능 <단서 신설 2016.3.22.>

➤ 정보통신망법

■ 제63조 [시행일 : 2016.9.23.]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6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1.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1항)
 - ✓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위의 **보호조치**에 대해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함

➤ GDPR과 국내법의 비교

- GDPR에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수준 적절성 판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우리는 보호수준의 적절성 상관없이 정보주체의 동의 있으면 보호조치 취하여 이전 가능
 -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같은 별도의 제재 규정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GDPR은 적용배제 사유로 국외 이전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차이
- GDPR에서는 적절성 판정, 적절한 보호조치, BCRs 등에 의한 국외 이전도 허용하고 있으나, 집행위원회나 감독기구의 채택 or 승인을 요하고 있음
- 우리 입법에서는 국외 이전에 대한 집행 당국의 후견적 역할이 미흡하여 그 이전 책임을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져야 하는 구조
- 최근 이용자 고지의 방식 간이화를 통한 동의 절차의 생략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 이는 처리위탁·보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제공 or 조회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
 - 제4항 해석상 동의 생략되는 경우 보호조치도 불필요 (보호조치 더 필요한 경우?)

➤ 한국과 EU 사이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

- **한·EU FTA 제7.43조** : 발효 후 2년 이내에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정보처리(data processing)가 요구되는 경우 **그 처리를 위한 정보의 역외 이전**을 허용하도록 규정
 - 다만 그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 **동 협정문 부속서 7-라** : 정보이전 허용방안 마련할 때 소비자의 민감정보 보호, 민감정보의 무단재사용 금지, 감독강국의 기록접근권 보장, 기술설비의 소재지 요건 등을 함께 다루기로 함
- 개인신용정보와 달리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우리 기업이 EU로부터 국내로 이전하는 문제는 **EU Directive 또는 GDPR의 적용**을 받게 됨

➤ 한국과 EU 사이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EU Directive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적절성 판정을 받지 않아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음
- 개인정보 역외 이전 계약 체결 시 EU 회원국 감독기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개인정보의 국내 전송이 가능한바, 계약체결 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준수를 위해 법률자문 비용 소모와 사업 지연 발생
- 최근 GDPR의 제정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적절성 판정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2015년 말 행정자치부는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
- EU 기준에 맞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규정을 보완하는 등 EU 적절성 판정에 대비한 국내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함

👉 적절성 판정국 : 현재까지 11개국

Andorra, Argentina, Canada(commercial organisations), Faeroe Islands, Guernsey, Israel, Isle of Man, Jersey, New Zealand, Switzerland, Uruguay 등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international-transfers/adequacy/index_en.htm)

cf. 일본 : 현재 적절성 판정 절차 진행 중

5. 특수정보처리의 상황

제85조 **개인정보의 처리와 표현의 자유**

1. 회원국은 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언론의 목적과 학문적·예술적·문학적 표현의 목적을 위한 처리 포함)와 **조화**시켜야 함
2.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회원국은 **언론(journalism)** 목적 or **학문적·예술적·문학적 표현**의 목적을 위한 처리에 대하여 제2장(일반원칙), **제3장(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관리자와 처리자), 제5장(**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6장(독립적 감독기구), 제7장(협력 및 일관성), **제9장(특수정보 처리상황)**에 대한
 - **exemptions** 또는 **derogations**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함
3. 각 회원국은 이에 따라 채택된 법의 규정 및 후속 개정법 or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보고**하여야 함

➤ Recital 153

- 그러한 예외 또는 적용배제가 회원국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속하는 회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함
- 모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journalism과 같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개념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ECJ 판결 : C-73/07

- 핀란드 조세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약 120만명의 조세정보를 배포한 것이 문제된 사안
- ECJ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진 중요성에 비추어 journalism의 개념은 가급적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
-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위해 정보보호권의 특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문서에 나오는 개인정보의 전송은 대중에게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 한 이용된 미디어의 형태와 상관 없이 보도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영리목적 활동을 위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고 함

➤ 국내의 관련 판례

-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는 '공시'로 말미암아 발생할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헌재 2011. 12. 29. 2010헌마293, 판례집 23-2하, 879](#))
- 국회의원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 공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05.24. 자 2011마319 결정\[가처분이의\]](#))
- 국회의원과 동아닷컴이 공개의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공개에 따른 적절한 보호대책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전교조 가입 교원의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그것이 비록 **학생과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 권리 등이 사생활의 보호 및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 권리 등의 법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손해배상\(기\)\]](#))

제86조 개인정보 처리와 공문서에 대한 공적 접근

- 공공기관, 공공단체 or 공공이익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보유하는 공문서(official documents) 안의 개인정보는,
- 공문서에 대한 **공적 접근**(public access to official documents)과 본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의 **조화를 위하여**,
- 유럽연합 or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속하는 회원국의 법에 따라, 그 공공기관 or 단체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음

❖ ECJ의 판결 : European Commission v. Bavarian Lager (C-28/08)

- 유럽 집행위원회가 회의 참석자 일부의 반대로 참석자 전원의 이름을 지운 채 회의록을 공개하자, 참석자 전원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소송으로 청구한 사안
- ECJ는 문서접근권은 언제나 정보보호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분공개로 공개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 회의록 전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

제86조 개인정보 처리와 공문서에 대한 공적 접근

❖ ECJ의 판결 : Volker and Markus Schecke and Hartmut Eifert v. Land Hessen (C-92/09)

- EU 농업보조금 수혜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령액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사안
- ECJ는 두 개의 EU 농업지원기금의 수혜자의 이름과 그들의 상세한 수령액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권을 제한하지만, 개인정보보호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
- 공동체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EU에 의해 인정된 일반적 이익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하면서도,
- 농업보조금 수혜자의 이름과 정확한 수령액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
- ECJ는 유럽농업기금의 수혜자들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EU 입법을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

➤ 국내의 관련 판례

-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0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공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해 다른 이익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에 권리남용 인정
- 세무관청이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우선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5.08.24. 선고 94구39262 판결 : 확정](#))

제88조 고용 상황에서의 처리

1. 회원국은, **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 ✓ 특히 채용, 고용계약의 이행 및 법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의무의 면제, 경영, 근로의 계획과 조직, 작업장에서의 **평등과 다양성**, 작업 중의 건강과 안전, 고용주나 고객의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 ✓ 고용에 관한 권리와 이익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향유와 행사를 위하여,
 - ✓ 고용관계의 종결을 위하여,
 - 고용관계에 있어서 피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와 자유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특수한 원칙**을 규정할 수 있음
2. 그러한 규칙들은 처리의 명백성, 사업체 또는 기업체 내부의 개인정보의 이전,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감독시스템에 특별히 유의하여
 - 정보주체의 인간의 존엄성, 정당한 이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하고 특수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함
3. 각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법 규정들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및 그들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적 개정을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Working Party 29, Opinion 8/2001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employment context

- 고용정보의 처리의 법적 근거로서 동의의 의미를 분석,
-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역학관계 불균형으로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지적,
- 동의가 요청될 때의 상황이 고용관계에서 동의의 효력을 평가할 때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

❖ 전자적 노동감시의 상황

- 오늘날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작업 감독, 재산권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작업장에 CCTV를 설치, 운영하거나 또는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의 사용을 감시하는 사례가 많음
- 실제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함

➤ Copland v. UK (ECtHR, No. 62617/00m 3 April 2007)

- 사적인 용도로 대학시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교 직원의 전화,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을 비밀리에 감시하여 문제된 사안
-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의 사적인 전화, 이메일과 인터넷의 이용을 감시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제89조 공익상 아카이빙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or 통계적 목적의 보호조치와 적용배제

1. 공익상의 Archiving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는, 이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어 함
 - 그 보호조치로서 특히 data minimisation 원칙이 준수되도록 기술적·조직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가명화(pseudonymisation)로 위의 목적들이 충족될 수 있다면, 가명화도 역시 위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식별을 허용하지 않거나 or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추가적 처리에 의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추구해야 함
- 👉 공익상 Archiving 목적 : ex. 과거 전체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의 정치적 행위,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과 관련된 특수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 등 (cf. Recital 158)

제89조 공익상 아카이빙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or 통계적 목적의 보호조치와 적용배제

2. 개인정보가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EU or 회원국의 법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과 보호조치 하에서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에 규정된 권리의 적용배제를 규정할 수 있음 (cf. 제17조, 제20조)
 - 다만, 이는 그러한 권리들이 그 특수한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적용배제가 그 목적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개인정보가 **공익상의 Archiving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경우, EU or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과 보호조치 하에서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권리의 적용배제를 규정할 수 있음 (cf. 제17조)
 - 다만, 이는 그러한 권리들이 그 특수한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적용배제가 그 목적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처리가 동시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 적용배제는 **각 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처리에만** 적용되어야 함

➤ Recital 156

- 공익상의 Archiving 목적, 과학적·역사적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시, 회원국은 통지의 요건(제15조)과 정정권(제16조), 삭제권, 잊힐 권리(제17조), 처리제한권(제18조), 정보이동권(제20조), 반대권(제21조)에 관한 구체화(specifications)와 적용배제(derogations)의 규정이 허용됨
- 과학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도 역시 임상실험에 관한 것처럼 다른 관련 입법에 따라야 함

➤ Recital 157

- 등록부에 근거한 연구는 심장혈관계 질병, 암과 우울증 등 광범한 의학적 상태 or 실업과 교육 기타 삶의 조건들처럼 다수의 사회적 조건 등 매우 가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음
- 그러한 연구 결과는 지식에 기반한 정책의 형성과 실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지식을 제공함
- 따라서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EU 또는 회원국의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건과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처리될 수 있음

- Recital 158

- 개인정보가 **아카이빙 목적**을 위해 처리될 경우, 이 규정은 **사자(死者)**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Recital 162

- **통계적 목적**은 그 처리 결과가 개인정보가 아닌 **총합적 정보**라는 것과 개인정보가 특정 자연인에 관한 조치나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함
- 따라서 개인정보가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될 경우, 일정한 보호조치 하에서 **통지의 요건**(제15조), **정정권**(제16조), **처리제한권**(제18조), **반대권**(제21조) 관련 조항이 **적용배제**될 수 있음

- Handbook 8.4

- 통계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EU Directive 제6조 제1항 (b)호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로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가 필요하며, 통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히 **직업상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Huber v. Germany (ECJ, C-524.06, 16 December 2008)

- ECJ는 통계목적을 위하여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감사합니다